

【별표 3】

음주운전사건 유형별 징계기준

음주운전 유형		처리기준	비고
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	혈중알코올농도가 0.08퍼센트 미만인 경우	감봉 - 견책	1. "음주운전"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.  2. "음주측정 불응"이란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.
	혈중알코올농도가 0.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불응의 경우	정직 - 감봉	
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		해고 - 정직	3. "중상해"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,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·중대변형,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·불치의 부상·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·질병을 말한다.
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		해고	
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		해고 - 정직	
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		해고	
음주운전으로 인적·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	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	정직 - 감봉	4. "운전업무 관련 근로자"란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.  다만, 운전업무 관련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.
	중상해의 경우	해고 - 정직	
	사망사고의 경우	해고	
	사고 후 「도로교통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해고	
운전업무 관련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	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	해고	
	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		